홍성군 공고 제2026- 2041호

202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

2027년도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홍성군수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근무예정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기간제근로자	1명	2027.1.4.~ 2027.6.30.	· 개별공시지가 관련 조사 · 전산시스템 자료 입력 및 정비

❑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026. 11. 17.(화) ~ 11. 25.(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17.(화) ~ 11. 25.(수)

※ 근무시간(09:00 ~18:00)내에 접수하며, 토·일요일 및 평일 중식시간은 제외

- 접 수 처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11.2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 시험일정(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2026. 12. 1.(월) ※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 2차시험(면접심사): 2026. 12월(예정) ※ 일정공고 및 개별별도 통보

- 최종합격자 : 2026. 12월(예정) ※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 근무기간 및 채용예정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단축 및 인원감축 등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관련수행 계획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선택사항)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이력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기본증명서 1부.(상세)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연령제한: 19세 이상인 자

※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일(면접전형) 공고일 기준

- 성별제한 : 제한없음(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제한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에 둔 자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유의사항 : **근로계약 기간 내 3일 이상 무단결근, 3회 이상 업무지시 미이행**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13조 및 16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됨

❍ 우대요건(가점) ※ 만점의 3%~10%까지 적용

- 법정 우대가점

구 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증빙서류
취 업 지 원 대상자 (법 정 가 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 율 (5% 또는 10%) ※중복불가,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 별 가 점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3% 또는 5% 가점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 해당업무관련 가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5%)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업무 적격여부 심사평가 기준 미달시 채용하지 않을수 있음

4. 근로조건

❑ 보 수 : 85,600원/일(최저임금 10,700원×8시간)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27. 1. 4. ~ 6. 30.(6개월)

❍ 보 수 : 일급 85,600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상여금(명절휴가비) 지급

5. 기타사항

- ❍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 합니다.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응시자격 요건은 고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사·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근무기간 및 채용예정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단축 및 인원 감축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041-630-1443, 173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홍성군 민원지적과 / 202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본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를 작성하여 팩스(041-630-1550) 또는 이메일(sinabro19@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채용부서에서 부담합니다.

4. 홍성군청 민원지적과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 일

홍 성 군 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응시원서

1. 공통사항

지원 분야		**응시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생년월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지원 자격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				
우대 사항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가점 사항 여부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의사상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응시번호		**응 시 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20 년 월 일 홍성군수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홍성군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기소개

-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 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체(휴먼명조), 크기(13포인트), 줄간격(160%)으로 작성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가치관, 경력사항, 인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　　(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기소개

-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 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체(휴먼명조), 크기(13포인트), 줄간격(160%)으로 작성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홍성군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되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성과 목표별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　　(인)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개별공시지가업무(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13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홍성군수 귀하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지원분야		성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